

# 인 천 지 방 법 원

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04395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1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오재홍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06.03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4. 1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: 최광복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07.20.~ 2023.07.19.	99,000,000		2021.07.20.	2021.06.28.	2025.3.28.	
최광복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	99,000,000		2021.07.20.	2021.06.28.		
<p>&lt;비고&gt;</p> <p>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:최광복):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대차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약서가 제출됨</p> <p>최광복: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04.26.임</p>										
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6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약약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04395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2-157

삼성아트빌라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69번길 20-16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

다세대주택

지층 78.69㎡

1층 78.69㎡

2층 78.69㎡

3층 78.69㎡

4층 78.69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02호

철근콘크리트조

34.275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342-157

대 101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01분의 9.42

감정평가액

60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5.12.23

60,000,000

6,000,000

2회

2026.02.05

42,000,000

4,200,000

3회

2026.03.20

29,400,000

2,940,000

4회

2026.04.21

20,580,000

2,058,000